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71호 2010. 3. 9(화)

포항시보

- 시장지시사항..... 2
- ◀ 입법예고 ▶
- 포항시 경관 조례 입법예고(제2010265호) 4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0-268호) 19
- ◀ 고 시 ▶
- 포항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0-10호) 87
- 포항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0-11호) 89

회 람									
--------	--	--	--	--	--	--	--	--	--

시장 지시(훈시)사항
 - 2010. 3. 8(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3.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은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기에 간부들은 긴장하여 솔선수범하기 바람. - 지난 3. 5일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 분지적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 생각과 사고를 가져 주시기 바람. 안 된다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열정, 방법 등을 연구해야할 것임.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업 발굴 및 추진 준비 철저 - 부서별 추진할 녹색성장 추진사업 많음. 복사용지·수돗물·전기절약 등 관련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바람. - 시에서 솔선수범하고, 전시민에게 홍보하고 종교단체에도 참여 유도토록 가능한 시스템(문자메시지 전송등) 구축하기 바람. ○ 도민체전 준비상황을 세밀히 챙겨주시기 바람. ○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을 정예화 하여 구성토록 바람. - 연령 등을 감안해 엘리트요원을 선발 및 정예화 하되 타 단체와 중복회원 없도록 구성 바람. ○ 3. 12일 식목행사(호미꽃면 대보리) 준비 철저 바람. ○ 우리 쌀 현미에 대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 바람. ○ 시가지 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 바람 	<p>전 부 서</p> <p>녹색성장팀 (전 부 서)</p> <p>체육지원과 (전 부 서)</p> <p>재난안전과</p> <p>도시녹지과</p> <p>남북구보건소</p> <p>전 부 서</p>

<p>지 시 '10-039</p>	<p>○ 일자리 창출 및 보고회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 다양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확대 발굴바람. - 월~수요일까지 일자리 발굴하여 목요일 보고회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추진 바람.</p>	<p>경제노동과 (전 부 서)</p>
<p>지 시 '10-040</p>	<p>○ 오는 3.10일 열리는 AFC컵 축구경기(對히로시마)에 많은 시민과 직원들이 응원에 참여토록 바람.</p>	<p>체육지원과 (자치행정과)</p>
<p>지 시 '10-041</p>	<p>○ 선남선녀 만남의 장을 마련 바람. - 시청, 포스코, 성모병원 등 미혼 직원 결혼을 위한 '선남선녀 만남의 장' 을 마련·추진하여 결혼문화를 정착 도모 바람.</p>	<p>저출산고령화 대책과</p>
<p>추가지시 '10-032</p>	<p>○ 우리시 특산물 홍보용 전광판(LED, 시경계 및 관문입구) 조기 설치 - 광고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조기에 설치 바람.</p>	<p>수산진흥과 (홍보담당관)</p>
<p>지 시 '10-042</p>	<p>○ 경주시 소재 우리시 대형광고판 내용을 변경하기 바람.</p>	<p>테라노바팀 (홍보담당관)</p>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0-265호

「포항시 경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3. 2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경관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관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포항시의 가치 있는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개성 있고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공공기관, 개발행위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관계획 수립, 경관계획의 구분, 경관계획 수립제안, 공청회 개최 및 의견청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야간경관계획, 공공시설물,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 관리 방안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라.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의 선정,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마. 경관협정 체결자, 경관협정서 작성,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바.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경관과 관련된 다른 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사. 도시경관의 기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

3. 관련법령

- 「경관법」(법률 제847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3.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 테라노바팀(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테라노바팀 ☎ 054-270-3754, FAX : 270-3749, E-mail : hug2020@korea.kr)에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경관 조례안 1부

포항시 경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포항시의 가치 있는 경관자원을 시민들과 함께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 및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관리대상을 말함
2. “경관계획”이라 함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계획으로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구역 또는 특정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함
3. “경관협정”이란 일정지역 또는 마을단위 등 특정구역에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함
4. “경관사업”이란 경관계획 등에 의한 경관시책의 일환으로 공공, 민간 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국가나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하여 경관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경관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 안의 경관과 관련된 시설물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별법에서 경관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은 개별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 전체의 경관 수준 향상 및 특정한 구역에 대한 경관 개선 등을 위하여 분야별, 권역별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구분) ① 시장이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 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경관계획
- 2.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경관계획
- 3. 수변경관 보존 또는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 4. 시가지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 5. 역사문화관광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 6. 산업단지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 7.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계획
- 8. 그 밖에 시민의 제안과 시장이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지구 및 분야에 대한 경관계획

②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관관리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 수립제안) ① 법 제7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안의 배경, 기본방향 및 목표
- 2. 해당 분야 또는 지역의 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 의견
- 3. 경관형성에 대한 전망
- 4. 시에서 수립한 경관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 5. 자원조달 방안 및 단계적 추진방안
- 6. 경관 기본구상도 또는 경관계획도(1/5,000 ~ 1/10,000)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요구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청회 개최 및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1. 개최목적
- 2.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 4. 의견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1. 해당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된 당사자
-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발표자·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용역 수행자, 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경관관리

제10조(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관리) 별표 1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는 경관계획을 검토하여 경관에 관한 가이드라인 적용 또는 경관관리를 위한 별도계획 수립 여부를 경관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 ①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2.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3. 공원
4. 교량 및 부속시설
5.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상징 조형물
6.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주요 산업시설·항만시설 및 그 주변
2.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2조(공공시설물의 경관관리) ① 별표 2에 의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그 형태, 디자인, 색채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관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향상에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 또는 제안공모 등의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로에 설치되는 다양한 시설물로 인한 혼잡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을 통합하거나 새롭게 통합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기존 건축물의 경관관리)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경관디자인상 시상) ① 시장은 경관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명칭·대상·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장 경관사업

제15조(경관사업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2.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 3.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 4. 그 밖에 공공 또는 민간에서 경관향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16조(경관사업의 선정) ①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에서 경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되, 민간에서 제안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② 경관사업의 선정은 경관형성의 기여도, 지역예의 기여도, 투자의 적절성, 사업추진과정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 1. 경관형성 기여도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가. 지역적 특성 부합여부
 - 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타 사업과의 연계여부
 - 다. 주변시설, 역사·문화적 자원 등의 배려여부
- 2. 지역예의 기여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가. 부가적인 사업 유도가능 여부
 - 나. 관광 및 지역산업에 기여 여부
 - 다. 선도적인 시책인지의 여부
- 3. 투자의 적절성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가. 사업의 시급성
 - 나. 사업비 조달방법의 적정성과 타당성
- 4. 사업추진과정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가. 지역주민의 참여 의지
 - 나. 지속적인 경관관리의 가능성
 - 다. 경관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가능 여부

제1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대상구역 현황 및 전경

- 2. 사업시기 및 기간
- 3. 사업의 기대효과
- 4. 사업비 산출근거
- 5. 사업비 조달방안
-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 7. 사업시행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포항시의회 의원
- 2.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3.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 4.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5. 경관사업 업무담당 국장

④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경관사업 완료시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협의체의 기능) 제18조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관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 2. 경관사업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 3. 경관사업에 대한 협의 및 건의사항
- 4. 시장이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경관사업의 평가) ① 경관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대상지역의 이용자 및 주민,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 해당 사업의 담당실무자등을 대상으로 사업결과 보고,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을 받은 후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경관협정

제2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 따라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에서 협정을 체결하도록 제시한 사항
-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24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 2. 경관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 4. 경관협정 이행계획
- 5.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 이행시 조치방안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 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 2.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 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 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7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② 경관협정 체결과정 및 사업시행을 위한 전문적 지원(협정서 작성, 전문가 지원, 사업진행 과정의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경관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2. 경관사업의 필요성 및 경관 기여도
- 3. 단계별 · 연차별 사업계획 및 관련 도서(圖書)
-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5. 유지관리계획

제29조(경관협정에 대한 평가) ① 경관협정에 대한 평가는 제21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를 준용한다.

②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주민,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 해당 사업의 담당실무자등을 대상으로 사업결과보고,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경관위원회

제30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23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 또는 심의 및 자문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35조(위원회 심의 및 자문) ①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지원, 경관협정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 형성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시상에 관한 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2. 경관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신규개발사업의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계획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6.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사업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물(건축물 및 부속시설, 공원, 제12조에 규정한 공공시설물 등)의 계획과 설계에 관한 사항 다만, 설계공모·제안공모 등 공모방법 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경관저해 건축물의 판정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9. 「포항시 건축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
10.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및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대상 중 건축주가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 11. 간판시범거리의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 1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 인가 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
 - 1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사항
 - 1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대상이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초빙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34조제3항의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과 경관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전문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에서 5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포항시 건축 조례」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장 보칙

- 제40조(도시경관의 기록)** ① 시장은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 자료로 보관하고 도시경관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경관기록화 사업은 5년마다 시행하며, 포항의 변화되는 경관을 비교 분석하고,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 및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해안매립, 택지조성, 산업단지 조성, 도로 개설 및 확포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시경관의 기록에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전·후의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경관관리가 필요한 개발사업 대상 (제10조 관련)

사업구분	규모	단위	비고
해안매립	10,000	m ²	
산업단지 조성	100,000	m ²	
택지조성(구획정리사업 포함)	1,000,000	m ²	
도로개설 및 확장	5.0	km	

[별표 2]

관리대상 공공시설물 (제12조 관련)

1. 도로시설물

가. 도로구조물 : 교량, 고가도로, 입체교차로, 보도육교 등

나. 도로부속구조물 : 도로변 옹벽·방음벽 등

다. 도로부속시설물 : 가로등, 안내표지판 및 이와 유사한 것

2. 문화관광시설 : 공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행정기관 및 마을안내판, 동상, 기념비 등

3. 가로녹지시설 : 분수대 등

4. 환경관리시설 : 휴지통, 공중화장실 등

5. 교통관련시설 : 택시 및 버스승강장, 자전거보관대,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류소표지판,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6. 도로점용허가 대상물 : 분전함·공중전화·우체통 등 지상시설물, 사설안내 표지물, 아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매표소 등

포항시 공고 제2010-268호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3월 3일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가 합병됨에 따라 장소 지번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 같은 리 4-4, 성곡리 1223번지” 로 표기하고, 수산물도매시장의 장소 지번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1-22, 2-3, 575-1, 575-5번지” 로 표기함.(안 제2조)
- 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유효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 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 로 조정하여 법인의 중장기 시설투자를 유도하는 등 안정적인 도매시장 운영토대 마련(안 제8조, 제41조)
- 다.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최소 자본금 규모를 “15억원” 에서 “10억원” 으로 하향 조정(안 제11조, 제44조)
- 라.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할 보증금을 전년도 일평균 거래 금액의 “100분의

20” 에서 “100분의 50” 으로 상향 조정(안 제12조)

- 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원활한 대금지급을 위하여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 을 “순자산액 비율” 로 변경(안 제14조, 제48조)
- 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부류별 월간 최저거래규모 기준 마련(안 제15조, 제45조)
- 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임면사항을 임면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을 정함(안 제21조)
- 아. 농수산물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도매시장에서의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26조)
- 자. 중도매인(중도매법인 포함)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 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 로 조정하고,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로 조정(안 제27조)
- 차. 중도매인(중도매법인 포함)을 대신한 보조경매 참가자의 운영 기준을 마련(안 제36조)
- 카. ‘출하자 등록제’ 를 의무적 “출하자 신고제” 로 변경(안 제56조)
- 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 대하여 손실보전금, 출하 및 판매와 관련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5조)
- 파. 도매시장 내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과 관련된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 하.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변경

3. 관련법령

-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라.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및 제5조(품질인증), 제12조(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 마.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화) 및 제6조(품질인증)
- 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번지, 전화 : 054-270-5513, 팩스 : 054-270-5520)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명칭	장소	면적(m ²)	
		대지	건물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 4-4, 성곡리 1223	84,053	29,872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포항시 북구 죽도동 1-22, 2-3, 575-1, 575-5	1,189	1,242

제3조(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 2. 수산부류: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패류, 해조류, 짓갈류
- 3. 그 밖의 품목: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품목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일요일, 신정, 설 및 추석 연휴의 휴업일을 제외하고 매일 영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별 영업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적정 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3개 법인
- 2.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 수산부류 1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은 생략 가능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

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8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 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여 지정 시 시장이 정한다.
- ⑥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제6조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하는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 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매 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서 당해 도매 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수준 이하인 경우
3.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으로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공모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 2.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가 없을 것
-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과부류 : 15억원
- 2. 수산부류 : 10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 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 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 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4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 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서 규정한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5조(최저거래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부류별로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시장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 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에 의하여 관리될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경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경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휴·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 결정시 이를 당해 도매시장의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경매사 임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임면된 경매사를 면직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 4. 경매순서 조작
-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 7.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제23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으로 확보하여야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제24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 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 시장과 공공출자법인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전자거래)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 할 수 있다.

제3장 중도매인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 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82조제5항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6. 제31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신규 중도매업 신청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7. 제32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자
 - ③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28조(상한 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별표 3과 같다.

- ②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개인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 ④ 중도매인은 제28조에 의한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인은 제4항에 의한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31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부류별	금액
청과부류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수산부류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②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이라 함은 분기별 총거래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도매 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33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 에게 시설사용면적·위치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 사용면적·위치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중도매법인 포함)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 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도매인 본인 또는 중도매법인 대표자 외의 자를 대신한 경매의 참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병원입원 및 신병치료로 경매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
2. 해외여행, 연수 등으로 장기 출타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가족 또는 종업원 1명에 한하여 기간과 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을 승인할 수 있다.

제37조(변경사항의 신고)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중도매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 후 이를 재개할 경우
- ② 제30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38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은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

인의 인수·합병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시장도매인

제39조(적정수) ①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지정조건)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경우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은 생략 가능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 충족 여부
- 2. 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여 지정시 시장이 정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9조제1항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

도매인의 지정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3조(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 2. 임원 중 당해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44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 1. 청과부류 : 15억원
- 2. 수산부류 : 10억원

제45조(최저거래금액) ①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부류별로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보증금 납부) ①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 지정기간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부족에게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보증금 반환 및 순자산액 비율) 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는 제13조, 순자산액 비율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8조(장부비치) ① 시장도매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판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에 의하여 관리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휴·폐업 신고) 시장도매인의 휴·폐업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51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52조(지정취소 등)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 위반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장 매매참가인

제53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수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54조(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사전에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36조를 준용한다.

제6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55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부류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

지 제1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 2.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 때
- 3.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 할 경우 당해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입력, 다른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여부 조회 등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56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출하자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57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산지 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불량 출하자 제재방법) 시장은 숙박이, 수량, 중량 등 품질,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시검사제도 등을 실시하여 불량 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9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 제3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품목별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

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최소출하량 기준을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한다.

제7장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제60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 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 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별지 제18호 서식의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61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제 2항 단서규정에 의한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 외에 상장예외품목 거래 장소 분리 등 기타 상장예외 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2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6호에 의해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할 수 있는 품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그 가격은 출하자, 경매사, 중도매인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정가

매매(수의매매)결과보고서를 거래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63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의 월 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2호 서 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 등을 매월 말 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4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 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 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5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량입하품
 2.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출하품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의한 표준규격품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의한 품질인증품
 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에 의한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
 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의한 표준규격품
 8.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의한 품질인증품
 9.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은 농산물

10. 파렛트 적재 출하품

제66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거래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 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와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 : 전광판에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수량, 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 에는 낙찰자번호, 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 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 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하여야 함.
3.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품종, 수량, 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 입찰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5호 서식의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 경매 등 경매 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수량별로 선별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등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 라. 경매사가 출하자, 품목, 수량, 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
 -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69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 장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6호 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의해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71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

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2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71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하여 출하 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4조 및 제47조에 의한 순 자산액으로 같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시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납부한 보증금 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의 범위 안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2조 및 제46조에 따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73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46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 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시 우대할 수 있다.

제74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72조제3항에 의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애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 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 상

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5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의한 표준송품장 양식은 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애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 송품장을 접수 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애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6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의한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

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78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의한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적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9조(공시내용)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이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거래 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 3.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도매시장의 게시판과 정보통신망 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 별지 제28호 서식 및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80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 내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식품위행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 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산물의 출하자에 대하여 도매시장 출하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 ③ 농산물의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 제81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 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 ②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 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 제82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 제83조(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 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되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결정과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4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

②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1항에 정해진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1항에 정해진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출하자과 매수인으로 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5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① 시장은 쓰레기발생을 억제 하고 표준규격 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품목을 장관이 정한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동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다듬기·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시장 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용기 등 포장규격기준 외의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거나 시장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은 다음과 같다.

품 목	요 율(원/톤)
배 추	3,000
무	1,000
마 늘	5,000
양 배 추	1,000
파	1,000
양 파	5,000

③ 부담금은 출하물량에 제2항에 의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매시장 내에서 다듬기·재포장 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매 발생 행위별로 시장이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5만원으로 한다.

④ 부담금은 시장이 부과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출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담금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필요 경비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출하자나 출하자단체에 대한 포장재구입·포장재구입비 지원사업
2. 규격출하촉진을 위한 장려금지원, 시장시설개선·장비구입·교육·홍보사업
3. 쓰레기 감량화 및 규격출하품의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규격출하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 부담금의 부과·징수·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7조 (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은 별표 5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거래참가자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9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90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 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연도의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3월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의 위치·점포수 조정·사용료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평가 및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9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따라 도매시장별 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3조(구성) ① 위원회는 도매시장별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 진흥과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농수산물유통 관련전문가 및 농어민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도매시장입주업체 대표 및 유통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⑤ 간사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담당,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 수산행정담당이 된다.

제9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9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7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소집은 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8조(수당)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99조(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법 제7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별 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 1.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
-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100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도매시장별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포항시 수산물도매 시장은 수산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1명 및 출하자 대표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도매시장 입주업체 대표 및 유통중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간사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담당,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 수산행정담당이 된다.

제101조(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94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제10장 시장시설

제102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내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제103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 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4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에 사용 조건 등을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경우 영업장소의 반·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분리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 내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④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기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105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그 밖의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 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 제82조, 제83조 및 제86조에 의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제1항에 의한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용료,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관리비는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다.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시설변경·전대의 금지)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그 밖에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에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07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8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
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
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변경하거나 승인되지 아니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기타 납부금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9. 그 밖에 법령과 이 조례에 근거하여 발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제109조(대집행) 제107조 및 제108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10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11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 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2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 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13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4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115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 사용자에게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6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117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 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경매사, 산지유통인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9조(벌점제도) 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정 점수(벌점)를 배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벌점의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120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121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허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장이 개설한 도매시장에 입주 하여 영업중인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중도매인, 보조경매 참가자, 매매 참가인, 산지유통인은 제8조, 제27조, 제36조, 제53조, 제55조에 의하여 지정, 허가, 승인, 신고,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월간 최저 거래규모

도매시장명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1억원	1억원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1억원	1억원

[별표 2]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경매사 확보 기준표

구 분	3만톤 미만	3만톤 이상 ~ 7만톤 미만	7만톤 이상 ~ 10만톤 미만	10만톤 이상 ~ 20만톤 미만	20만톤 이상
인 원	2	3	5	7	매3만톤 마다 1명 추가

[별표 3]

도매시장별 중도매인의 적정수

도매시장명	부류별	중도매인수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210명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90명

[별표 4]

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도매시장명	부류별	시장도매인수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1명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1명

[별표 5]

거래참가증

<앞면>

<p>거 래 참 가 증</p> <p>(1)</p>		
	<p>사 진</p>	
<p>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p> <p>(2)</p>		

<뒷면>

<p>「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제87조에 의한 ()임을 증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포 항 시 장 (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증은 거래참가 시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 4.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한다. 5.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할 수 없다.

가로60mm×세로90mm

- ※1. (1)란에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경매참가자, 매매참가인 구분표시
- 2. (2)란에는 부류명 기재

[별지 제1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시 장 명			
	위 치			
	취급부류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명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의 잔액증명서
7.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겸영업무수행 보고서

도매시장 법인	법 인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도매시장명			
	겸영업무내용			
다른 경영주체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경영주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주사업내용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포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5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휴·폐업 신고서

신청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		대 표 자	
	주 소			
	취급 부류			

휴업기간(폐업일자)	사 유	공 시 방 법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개인, 법인)

신청인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상호명 (법인명)			
	참가 도매시장명		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법인명	
	거래품목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3cm×4cm) 3매 (3) 주거래은행 통장의 잔고증명서 1부 2. 법인의 경우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허가번호	중도매업허가증		(사진) 가로3cm×4cm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상 호 (법인명)		형태	개인·법인
허가사항	참가도매시장명		
	거 래 품 목		
	허 가 기 간	부 터	까 지 (년간)
<p>「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포 항 시 장 직인</p>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서식]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상 호 (법인명)	
	중도매업허가번호			
	주 소			
보조경매 참 가 자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신청사항	신청기간			
	신청사유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법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 1부(개인인 경우)
 3. 증명사진(3cm×4cm) 2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중도매인의 변경신고서

신청인	주 소			
	상 호	(중도매업 허가 번호 :)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참가도매 시 장 명			
	거래품목			
신고내역	내 용		사 유	
도매시장법인 (공판장)확인	년 월 일			
	법 인 명 대표자명	(인)		
<p>「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자 : (서명 또는 인)</p> <p>포항시장 귀하</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

신 청 인	시장도매인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시 장 명			
	위 치			
	거래품목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의 잔액증명서
7.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지정번호	시장도매인지정서		
시장명칭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시장도매인명		대표자	
지정기간	부터 까지 (년간)		
취급부류			
<p>「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1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포 항 시 장 직인</p>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12호서식]

사 진 (3cm×4cm)	매매참가인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참가 시장명		주된 경매참가 도매시장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품목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증명사진(3cm×4cm) 3매	1. 사업자등록증명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참가시장명			
	취급부류 (주품목)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 증명사진 (3cm×4cm) 3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등록번호	<p>산지유통인 등록증</p>			<p>사진 (3cm × 4cm)</p>
년도-일련번호				
-				
성명		생년월일		
도매시장명				
도매시장 주소				
취급부류(품목)				
등록일자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5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후면)

준 수 사 항

1. 등록된 도매시장 내에서 농수산물을 출하할 때에는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2.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 내에서 농수산물 출하업무 외에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포전매매 시에는 “표준계약서”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신청서

산지 유통인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변경사항	종전	변경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출하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e-mail)	
	출하 예정 도매 시장	
	취급 부류 (주품목)	
<p>「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포항시장 귀하</p>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증명사진(3cm×4cm) 2매(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의 경우)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매수도매거래 결과 보고서

도매시장법인명		대 표 자	
---------	--	-------	--

거래기간			
------	--	--	--

품 목	단 위	수 량	매수가격	판매가격	출하처	
					원산지	출하자

매수하여 도입한 사유	
-------------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0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

표자명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표준송품장											
출하일시			도착일시								
수 신			귀하								
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거래형태		매 수		위 탁		중 개					
매매방법		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							
출하 내역											
원산지	품목 및 품종	품질인증번호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번호		거래별 단량	등급 및 수량					비고
			이력추적 관리번호			특	상	중	하	계	
합 계											
운 입	입금 : 원				차량	기사명					
	(원)					차량번호					
출하자, 산지유통인	주 소							전화			
								팩스			
	성 명		(서명 또는 인)			송금은행					
						송금계좌					
					예 금 주						
		출하자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번호					기 타 (비등록)	농어민, 생산자단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도매인, 수출업자, 기타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지급일					중 개 상대자				
수령자 :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중도매업 허가번호			상호명	
	주거래법인			전화번호	점포: 자택:
허가 신청 사항	품목				
	취급계획	물량		금액	
	기간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 1부
 5. 증명사진(3cm×4cm) 2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허가번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		사진 (3cm × 4cm)
성 명		생년월일	
중도매업 허가번호		상 호	
주거래법인 및 번호			
거래장소			
허가기간			
거래품목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별지 제21호서식]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 보고서

도매시장명						
도매시장법인명				대표자		
일 자	년 월 일					
품 목	단 위	수 량	금 액	출하자	판매상대자	매매사유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라 정가매매 (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월별 거래실적 보고서

거래기간						
허가 및 지정번호 (등록번호)	성명	상호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잔액	담보금액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거래특례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품 목	수 량	출 하 자	판매방법	기 간

신청사유	
------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 보고서

법 인 명			대표자			
주 소						
품 목	수 량	출하자	판매가격	판매방법	매수인	
거래특례판매 사 유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6조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

성명(출하자)		출하자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사 항

품 목	중량 및 규격	수 량	최저가격	비 고

경매(입찰) 입회자

입회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매시장법인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관리번호		판매원표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					년 월 일(:)		정산	검산	기록	경매사
산지명										
출하총량						코드				
번호	출하자	품 목	중량 및 규격	등 급	수 량	가격 (정락)	총판매 대금	낙찰자번호 (매수인)		
운임 선급금				하역비 및 선별비		(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표준정산서

정산일자					상호명					
출하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점 포			

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

거래 방법	년	월	일	품목 및 품종	단위별 단 량	등급	수량	단가	총거래 금액	매수인
계										

공제 내역	위탁수수료		송금내역	송금액	
	운임선급금			은행명	
	하역비			계좌번호	
	선별비			예금주	
	쓰레기 유발부담금				
	지불액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거래실적보고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								
거래일자								
부류	품목	거래실적(당일)		상장경매실적		거래실적(누계)		비고
		물량 (Ton)	금액 (천원)	물량 (Ton)	금액 (천원)	물량 (Ton)	금액 (천원)	
합계								
과 실 류	사과							
	배							
	·							
	·							
	·							
	·							
채 소 류	수박							
	참외							
	·							
	·							
	·							
	·							
기 타 품 목	·							
	·							
	·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거 래 화 인 서

품 목	단 위	반출물량	가 격	반출지(대상)	반출차량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하여 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0 - 10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남구 대잠동 270-7번지 일원 포항성모병원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3월 9일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에 바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종합의료시설(포항성모병원)	포항시 남구 대잠동 270-7번지 일원	31,868	증) 62	31,930	포항시고시 제2009-117호 ('09.12.29)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종합의료시설 (포항성모병원)	· A=31,868㎡ → 31,930㎡ (증 62㎡)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 후 지적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확정된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0 - 11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남구 대도동 398번지 일원 포항 도시관리계획(운동장)의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3월 9일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중 운동장시설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결정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조서

1) 운동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운동장	포항 종합 운동장	포항시 남구 대도동 398번지일원	235,752		235,752	건고 제243호 (77.12.13)	

2)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합 운 동 장				235,752.0		235,752.0	
기정	1	육상경기장	남구 대도동 313-1	46,942.5	-	46,942.5	
기정	2	실내체육관	남구 대도동 380-3	10,800.0		10,800.0	
기정	3	실내수영장	남구 대도동 316-5	8,004.0		8,004.0	
기정	4	야구장	남구 대도동 일원	42,226.3		42,226.3	
기정	5	보링장	남구 대도동 420-8	4,197.7		4,197.7	
기정	6	도로	남구 대도동 315-1	42,547.8		42,547.8	
변경	7	주차장	남구 대도동 328-3	21,716.1	감)2,178.6	19,537.5	
변경	8	녹지	남구 대도동 398	38,558.1	감)7,742.9	30,815.2	
변경	9	다목적체육관	남구 대도동 328-46	20,759.5	감)158.5	20,601.0	
신설	10	롤러스케이싱장	남구 대도동 328-3		증)10,080.0	10,080.0	

3) 운동장 세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7	주 차 장	· 면적 감소 A = 21,716.1㎡ → 19,537.5㎡ (감 2,176.8㎡)	· 체육시설(롤러스케이트장)신설 계획으로 인한 주차장 면적감 소
8	녹 지	· 면적 감소 A=38,558.1㎡ → 30,815.2㎡ (감 7,742.9㎡)	· 체육시설(롤러스케이트장)신설 계획으로 인한 주차장 면적감 소
9	다목적 체육관	· 면적 감소 A = 20,759.5㎡ → 20,601.0㎡ (감 158.5㎡)	· 체육시설(롤러스케이트장)신설 계획으로 인한 주차장 면적감 소
10	롤러스케 이트장	· 신 설 A = 10,080.0㎡ (증 10,080.0㎡)	·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변경결 정에 따른 롤러스케이트장 신설 (도민체전 개최)

3. 도시관리계획(운동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4.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와 남구청 건축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